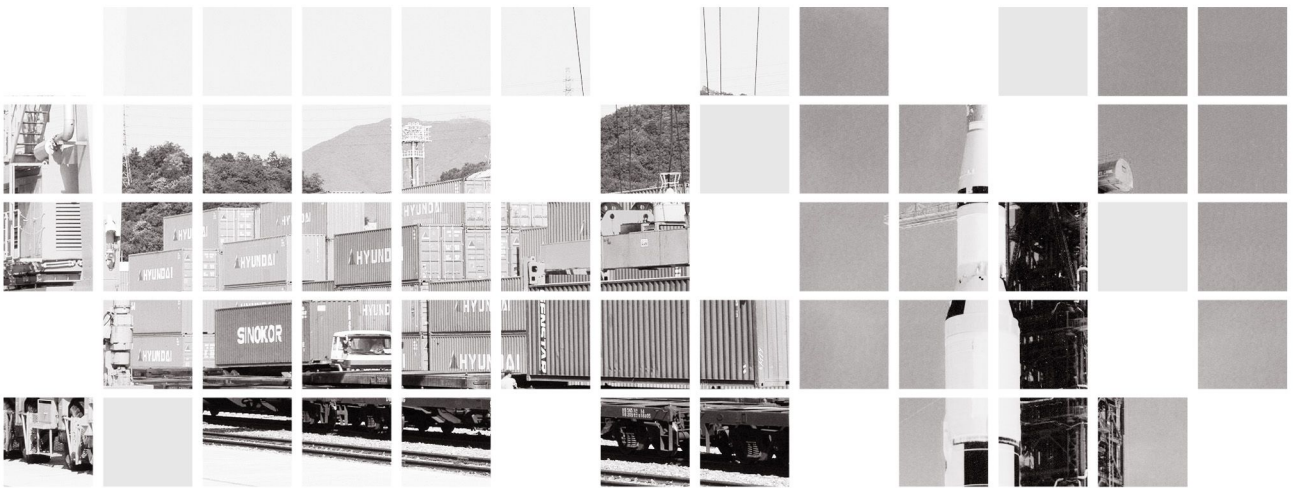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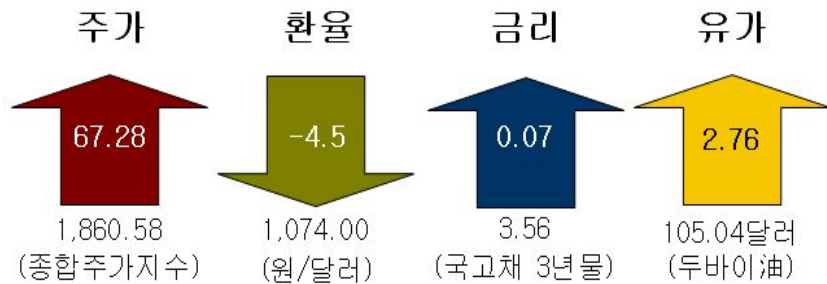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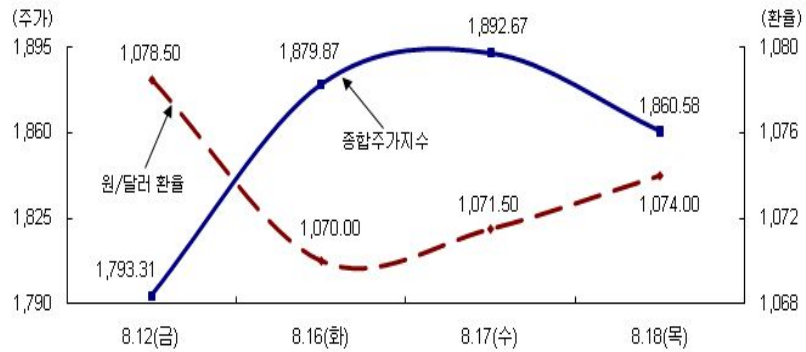
HRI Weekly Economic Review



[ 은퇴빈곤층(Retire Poor)의 추정과 5대 특성  
- 은퇴 준비 안 된 가구 100만 이상 ]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8.12~8.18)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은퇴빈곤층(Retire Poor)의 추정과 5대 특성	
- 은퇴 준비 안 된 가구 100만 이상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5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정 민 연구원 (2072-6220, chungm@hri.co.kr)  
           : 이 준 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은퇴빈곤층(Retire Poor)의 추정과 5대 특성 - 은퇴 준비 안 된 가구 100만 이상

#### ■ 은퇴빈곤층의 정의

은퇴빈곤층(Retire Poor)이란 '은퇴 후 소득 인정액이 최소생활비보다 적어 가난하게 사는 고령가구'로, 은퇴부유층(Retire Rich)는 '은퇴 후 소득 인정액이 적정생활비보다 많아 여유롭게 생활하는 고령가구'로 정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의에 따라, 은퇴빈곤층은 60세 이상 은퇴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주관적인 최소생활비 미만이고, 소득 인정액이 법정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를 추계하였다.

그리고 은퇴부유층은 소득 인정액이 주관적인 적정생활비 이상이고, 소득 인정액이 법정 최저생계비의 5배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규모를 추정하였다.

#### ■ 은퇴빈곤층과 은퇴부유층의 통계적 특성

2010년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추계·분석한 결과,

**첫째**, 2010년 현재 은퇴빈곤층은 101.5만 가구로서, 고령은퇴가구 (264.3만 가구)의 38.4%(약 10명 중 4명)에 달하는 반면, 은퇴부유층은 3.2%인 8.4만 가구에 불과하다.

**둘째**, 단독가구(독거노인)의 56.6%가 은퇴 빈곤층에 해당한다. 은퇴한 60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102.4만 단독가구 중 빈곤층은 58.0만 가구(56.6%)에 달하며, 부유층은 1.2만 가구(1.2%)에 불과하다.

**셋째**, 은퇴빈곤층의 자산의 대부분은 거주관련 자산에 묶여 있다. 은퇴 빈곤층의 평균 자산 7천만 원 중 거주 주택과 전월세 보증금은 76.7%를 차지하여 처분가능한 기타자산이 거의 없는 반면, 은퇴 부유층은 평균 자산 15억 7천만 원 가운데 거주관련자산이 47.5%에 불과하여, 자유롭게 처분하여 소비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넷째**, 은퇴자 중에는 주택을 소유하고도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가구가 전체 은퇴 빈곤층의 51.7%나 된다. 반면, 은퇴 부유층 가운데 유주택 가구 비중은 96.4%에 달한다.

**다섯째**, 은퇴빈곤층은 금융자산이 매우 빈약하고 그 중 개인적으로 준비한 노후 자금(사적연금)의 평균은 61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은퇴 부유층의 사적연금은 2,200만원으로 은퇴 빈곤층 보다 36배나 많다.

#### ■ 시사점과 과제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노령가구를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세대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사회통합의 잠재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은퇴 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장·단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은퇴빈곤층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연금과 즉시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고 복지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은퇴 후의 재취업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그 이후 세대들이 은퇴 빈곤층이 되지 않도록 사적 연금 활성화와 정년 연장의 검토가 필요하다.

## 1. 은퇴 빈곤층(Retire Poor)<sup>1)</sup>의 정의

### ○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준비의 중요성 부각

- 2011년 현재 한국의 평균수명은 80세로서, 60세에 은퇴를 한다고 가정하면 사망할 때까지 20년 이상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없이 생활해야 함
- **(개인 차원)** 은퇴를 설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며, 적어도 최소생활비를 확보해야 함
  - **적정생활비**란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은퇴노인이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이며, **최소생활비**란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은퇴노인이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뜻함
- **(국가 차원)**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은퇴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시급
  - 아직 은퇴하지 않은 국민들이 은퇴 후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는 공적연금제도를 정착시키고 사적연금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환경 마련
  - 최소생활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한 고령가구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노령연금 등의 공공부조제도를 촘촘하게 설계

### ○ (정의) 은퇴빈곤층(retire poor)이란 ‘은퇴 후 소득 인정액이 최소생활비보다 적어 가난하게 사는 고령가구’이며, 은퇴부유층(retire rich)란 ‘은퇴 후 소득 인정액이 적정생활비보다 많아 여유롭게 생활하는 고령가구를 뜻함

- 고령은퇴자에게 있어서 적정생활비와 최소생활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은퇴빈곤층과 은퇴부유층을 위와 같이 정의하였음
- **소득 인정액**은 보건 복지부에서 기초 노령 연금 대상자를 선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간 현재 소득과 현재 자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임
- 월 소득 인정액 = {연간 가처분 소득 + ((총자산 - 총부채) × 2%)} / 12
-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5%로 정했지만 본 연구에서 근로 소득 공제와 기본 재산액을 차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2%로 정함

1) 고령은퇴가구를 대상으로 빈곤층이나 고소득층을 정의한 기존 연구는 없음. Fortune紙와 The Street 紙가 각각 ‘Retire Rich’, ‘Retire Poor’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은 있으나,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채 ‘부자로 은퇴하는 방법’, ‘가난한 은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을 조언하는 수준에 그침

- 최소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은퇴노인이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
  - ‘2010 가계금융조사’ 설문문항 33번 “노후의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에 기입됨
- 적정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은퇴노인이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을 의미
  - ‘2010 가계금융조사’ 설문문항 34번 “노후의 월평균 적정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에 기입됨

○ (추정 방법) 통계청의 ‘2010 가계금융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사용하여 은퇴빈곤층과 은퇴부유층을 추정

- 은퇴빈곤층 가구주가 만60세 이상 은퇴 또는 무직자<sup>2)</sup>로서 ①소득인정액이 최소생활비 미만이고 ②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sup>3)</sup> 미만인 가구
  - 여기서 주관적 기준(최소생활비)과 객관적 기준(최저생계비)을 모두 적용하여 은퇴빈곤층을 추계
- 은퇴부유층은 가구주가 만 60세 이상 은퇴 또는 무직자로서 ①소득 인정액이 적정생활비 이상이고 ②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5배<sup>4)</sup> 이상인 가구

<은퇴빈곤층과 은퇴부유층의 정의 >

	은퇴빈곤층(Retire Poor)	은퇴부유층(Retire Rich)
정의	은퇴 후 소득 인정액이 최소생활비보다 적어 가난하게 사는 고령가구	은퇴 후 소득 인정액이 적정생활비보다 많아 여유롭게 생활하는 고령가구
가구주 연령	만 60세 이상	최동
가구주 직업	무직, 은퇴자	최동
가처분소득	소득 인정액 < 최소생활비 AND 소득 인정액 < 최저생계비	소득 인정액 ≥ 적정생활비 AND 소득 인정액 ≥ 최저생계비의 5배

- 2) 전체 60세 이상의 고령 가구 중 은퇴 후 직업이 없는 가구주 대상으로 본 연구는 진행됨. 60세 고령가구 중 단순 노무직, 임시·일용 임금 근로자, 농림어업 종사자등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주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됨(총 1,691.6만 가구 중 만 60세 이상 가구주가 480.8만 가구임. 그중 만 60세 이상 이고 은퇴자 혹은 실업자 가구주는 264.3만 가구임)
- 3) 2010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32,583원, 2인 가구 906,830원, 3인 가구 1,173,121원, 4인 가구 1,439,413원, 5인 가구 1,705,704원, 6인 가구 1,971,704원임
- 4) 2010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이 4.82배임을 참고하여 최저생계비의 5배로 기준을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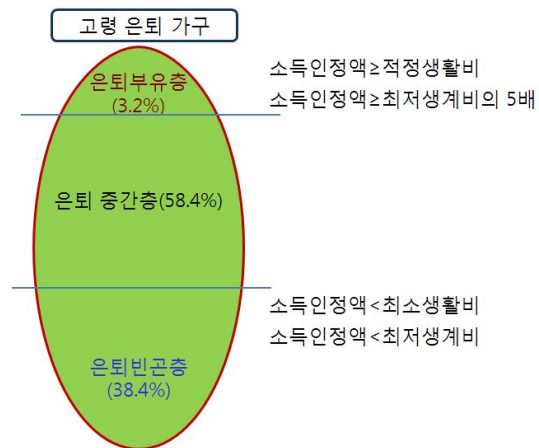
## 2. 은퇴빈곤층과 은퇴부유층의 통계적 특성

- (첫째) 2010년 현재 은퇴빈곤층은 101.5만 가구로서 고령은퇴가구 (264.3만 가구의 38.4%)(약 10명 중 4명)에 달하는 반면, 은퇴부유층은 3.2%인 8.4만 가구에 불과함
  - 2010년 현재 고령은퇴가구 264.3만 가구 중 은퇴빈곤층은 101.5만 가구로 38.4%에 달하는 반면, 은퇴부유층은 8.4만 가구로 3.2%에 불과
  - 은퇴빈곤층과 은퇴 부유층을 제외한 '은퇴 중간층'은 154.4만 가구로 고령은퇴가구의 58.4%를 차지함

<은퇴빈곤층과 은퇴부유층 추계>

만 60세 이상 은퇴가구	264.3만 가구 (100.0%)
은퇴 빈곤층	101.5만 가구 (38.4%)
은퇴 부유층	8.4만 가구 (3.2%)
은퇴 중간층	154.4만 가구 (58.4%)

<은퇴빈곤층과 은퇴부유층 분포도>



자료 : 통계청 '2010 가계금융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추산  
 주 : '은퇴 중간층'은 은퇴빈곤층에도 은퇴부유층에도 속하지 않는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소생활비보다는 많으나 적정생활비보다는 적은 가구로 정의함

- (둘째) 노인 단독 가구일수록 은퇴빈곤층의 비중이 높고, 노인 부부 이외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일수록 은퇴부유층 비중이 높음
  - 은퇴한 60세 이상 노인 1인으로 구성된 102.4만 단독가구 중, 은퇴빈곤층은 56.6%인 58.0만 가구인 반면, 은퇴부유층은 1.2%인 1.2만 가구에 불과함
  - 노인 혼자 사는 은퇴빈곤층의 월 소득인정액은 29.2만원으로 최소생활비 57.7만원의 50.6%에 불과. 또한, 소유하고 있는 자산도 적기 때문에 소득인정액과 가처분 소득의 차이가 거의 없음
  - 특히 가처분소득이 1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7.0만 가구의 경우, 부양책임을 지지 않는 비동거 가족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측됨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비동거 가족이 있더라도 수령 가능)

- 한편 은퇴부유층인 노인 단독가구의 가처분소득 188.6만원은 적정생활비 247.8만원의 76.1%에 불과하나, 은퇴 빈곤층 보다 보유한 자산이 많기 때문에 월 소득인정액이 384.3만원으로 적정생활비의 1.6배에 이룸

< 가구원수별 분포 >

(단위: 만가구, 만원)

가구원수	고령 은퇴 가구수	은퇴빈곤층					은퇴부유층				
		가구 수	최소 생활비	최저 생계비	소득 인정액	가처분소득	가구 수	적정 생활비	최저 생계비	소득 인정액	가처분소득
노인 단독 가구	102.4	58.0 (56%)	57.7	53.3	29.2	24.5	1.2 (1.2%)	247.8	53.3	384.3	188.6
노인 부부 가구	103.6	31.3 (30.2%)	90.3	90.7	47.6	29.8	4.1 (4.0%)	361.5	90.7	663.5	371.3
기타 가구	58.3	12.2 (20.9%)	90.4	109.8	52.4	37.2	3.1 (5.3%)	339.5	127.1	829.1	631.7
합계	264.3	101.5 (38.4%)	71.8	71.8	37.7	27.7	8.4 (3.2%)	337.9	96.5	673.9	425.4

자료 : 통계청 '2010년 가계금융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계

주 : 가구수의 괄호안은 고령은퇴가구수 대비 비중임

가처분소득, 최소생활비, 적정생활비, 소득인정액은 월평균임

기타가구는 '노인부부와 가구원', 혹은 '노인 1인과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 103.6만 노인 부부가구 중에서는 30.2%인 31.3만 가구가 은퇴빈곤층이고 4.0%인 4.1만 가구는 은퇴부유층임
  - 은퇴빈곤층인 노인 부부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47.6만원에 불과하여, 최소 생활비인 90.3만원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 가처분소득이 20만원 미만인 부부가구는 6.5만 가구
  - 은퇴부유층인 노인 부부가구의 가처분소득 371.3만원은 적정생활비 361.5만원보다 많고 소득인정액 663.5만원은 적정생활비 보다 1.8배 많음
- '노인 부부와 가구원', 혹은 '노인 1인과 가구원'으로 구성된 58.3만 '기타 가구' 중에서는 은퇴빈곤층 비중이 가장 작고 은퇴 부유층 비중이 가장 높음
  - 은퇴빈곤층 12.2만 가구로 20.9%이며 은퇴부유층은 3.1만 가구로 5.3%를 차지함

○ (셋째) 은퇴빈곤층은 은퇴부유층에 비해 자산 대부분이 거주관련 자산에 편중되어 있음

- (은퇴빈곤층) 평균 자산 7,117만원 중 부동산자산은 5,794만원으로 81.4% 차지하고, 금융자산은 1,259만원으로 17.7% 차지함. 특히, 거주관련 자산이 자산의 76.7%로 편중되어 있고 평균 부채는 1,105만원으로 부채 비율이 15.5%임
- 자산이 5억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은퇴빈곤층에 속하는 가구의 경우, 총 자산 11억 9,670만원 중 8억 4,000만원이 거주주택에 묶여 있음
- 한편 평균 부채는 3억 9,614만원으로 부채 비율이 33.1%이고 대출 잔액은 2억 7,471만원으로 매월 이자부담이 114.5만원(연이율 5% 기준)에 이름. 은퇴 준비 미흡과 과도한 부채로 인해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함 (11쪽 사례1 참조)
- 자산이 1억~3억원인 은퇴빈곤층은 평균 자산 1억 5,863만원 중 74.8%인 1억 1,863만원이 거주주택에 묶여 있음

※거주관련자산은 거주주택과 전월세 보증금의 합을 의미

< 은퇴빈곤층의 자산·부채 구성 >

(단위: 만원, %)

구분	총 자산						부채 총액			순자산
	부동산 자산	거주 주택	금융 자산	전월세 보증금	사적 <sup>6)</sup> 연금	대출 <sup>5)</sup> 잔액	임대 보증금			
1천만원 미만	221 (100.0)	35 (15.8)	33 (14.9)	168 (76.0)	86 (38.9)	9 (4.1)	116 (100.0)	114 (98.3)	0 (-)	105
1억 미만	4,038 (100.0)	2,742 (67.9)	2,405 (59.6)	1,264 (31.3)	878 (21.7)	36 (0.9)	261 (100.0)	225 (86.2)	36 (13.8)	3,777
3억 미만	15,863 (100.0)	13,272 (83.7)	11,863 (74.8)	2,433 (15.3)	591 (3.7)	140 (0.9)	1,860 (100.0)	1,118 (60.1)	740 (39.8)	14,003
5억 미만	35,125 (100.0)	30,833 (87.8)	23,833 (67.9)	3,929 (11.2)	1,375 (3.9)	685 (0.2)	6,110 (100.0)	3,885 (63.6)	2,208 (36.1)	29,015
5억 이상	119,670 (100.0)	114,000 (95.3)	84,000 (70.2)	5,186 (4.3)	0 (-)	87 (0.1)	39,614 (100.0)	27,471 (69.3)	12,143 (30.7)	80,056
전체	7,117 (100.0)	5,794 (81.4)	4,866 (68.4)	1,259 (17.7)	593 (8.3)	61 (0.9)	1,105 (100.0)	759 (68.7)	344 (31.1)	6,012

자료: 통계청 '2010년 가계 금융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계



- (은퇴부유층) 은퇴 부유층의 평균 자산은 15억 7,766만원이고 평균 부채는 8,705만원으로 부채 비율이 5.5%에 불과함. 또한, 거주 관련 자산의 비중은 47.5%에 불과함
  - 자산이 5억원 이상인 은퇴부유층의 경우, 평균 자산 17억 2,054만원 중 15.2%인 2억 6,087만원이 수익을 낳는 금융자산<sup>7)</sup>임. 평균 부채 9,086만원 중 이자부담 이 없는 임대보증금이 7,436만원으로 총부채의 81.8%에 이르러, 충분한 이자·배당소득 및 임대소득을 확보하고 있음
  - 자산이 1억~3억원인 은퇴부유층의 경우, 평균 자산 2억 2,104만원 중 수익을 낳는 금융자산이 7,854만원(35.5%)임.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아 이자와 배당으로 소득을 얻음
  - 자산이 1억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은퇴부유층인 가구의 경우, 평균 자산 6,226만원 중 98.8%인 6,150만원이 금융자산으로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을 확보하고 있음 (9쪽 사례2 참조)

< 은퇴부유층의 자산·부채 구성 >

(단위: %, 만원)

구분	총 자산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	사적 <sup>9)</sup> 연금		부채 총액	대출 <sup>8)</sup> 잔액	임대 보증금	순자산
		부동산 자산	거주 주택		전월세 보증금	사적 <sup>9)</sup> 연금				
1천만원 미만	-	-	-	-	-	-	-	-	-	-
1억 미만	6,226 (100.0)	0	0	6,150 (98.8)	0	100 (1.6)	0	0	0	6,226
3억 미만	22,104 (100.0)	13,500 (61.1)	10,000 (45.2)	7,854 (35.5)	3,000 (13.6)	114 (0.5)	10,650 (100.0)	10,000 (93.9)	500 (4.7)	11,454
5억 미만	36,772 (100.0)	27,000 (73.4)	20,333 (55.3)	9,299 (25.3)	1,000 (2.7)	784 (2.1)	3,333 (100.0)	1,667 (50.0)	1,666 (50.0)	34,439
5억 이상	172,054 (100.0)	142,680 (82.9)	81,351 (47.3)	26,087 (15.2)	273 (0.2)	2,391 (1.4)	9,086 (100.0)	1,582 (17.4)	7,436 (81.8)	162,969
전체	157,766 (100.0)	130,416 (82.7)	74,677 (47.3)	24,337 (15.4)	393 (0.2)	2,200 (1.4)	8,705 (100.0)	1,836 (21.1)	6,803 (78.2)	149,061

자료: 통계청 '2010년 가계 금융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계

- 5) 대출 잔액은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대출의 합을 의미함
- 6) 사적연금은 금융자산에서 연금 저축을 포함한 적금형 저축액과 연금 보험, 연금저축보험등을 포함한 저축성·보장성 보험 저축액의 합을 의미함
- 7) 금융자산 중 전월세보증금을 뺀 금액
- 8) 대출 잔액은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대출의 합을 의미함
- 9) 사적연금은 금융자산에서 연금 저축을 포함한 적금형 저축액과 연금 보험, 연금저축보험등을 포함한 저축성·보장성 보험 저축액의 합을 의미함

- (넷째) 은퇴자 중에는 주택을 소유하고도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가구가 전체 은퇴빈곤층의 51.7%나 되며, 은퇴 부유층 가운데 유주택 가구 비중은 96.4%에 달함
- 고령 은퇴자 중 주택을 소유한 180.6만 가구 가운데 빈곤층이 52.5만 가구로서 전체 은퇴빈곤층의 51.7%를 차지함
  -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의 경우 은퇴빈곤층은 무주택 가구 비율이 48.3%인 반면 은퇴부유층은 3.6%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 계층 간의 순자산 격차는 벌어짐
- 83.7만 무주택 가구 중 49.0만 가구인 58.5%가 은퇴빈곤층이고, 0.3만 가구인 0.4%가 은퇴부유층임
  - 1주택 가구 163.5만 가구 중에서는 은퇴빈곤층이 51.0만 가구로 31.2%이고, 은퇴부유층이 6.2만 가구로 3.8% 차지함
- 한편 17.1만 다주택 가구 중 8.8%인 1.5만 가구가 은퇴빈곤층이고, 은퇴부유층은 1.9만 가구로 11.1%에 불과함
  - 은퇴 빈곤층의 다주택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6.6만원에 불과한 반면 은퇴부유층은 667.0만원에 이룸

< 주택 소유별 분포 >

(단위: 만가구, 만원)

주택 소유별	고령 은퇴 가구수	은퇴빈곤층					은퇴부유층				
		가구 수	최소 생활비	최저 생계비	소득 인정액	가처분소득	가구 수	적정 생활비	최저 생계비	소득 인정액	가처분소득
무주택	83.7	49.0 (48.3%)	62.2	65.5	35.2	32.7	0.3 (3.6%)	316.7	78.2	493.8	324.7
1주택	163.5	51.0 (50.2%)	79.4	77.4	41.1	24.5	6.2 (73.8%)	341.7	95.7	686.3	437.0
다주택	17.1	1.5 (1.5%)	122.2	82.4	6.6	-21.9	1.9 (22.6%)	327.3	105.2	667.0	403.4
합계	264.3	101.5 (100%)	71.8	71.8	37.7	27.7	8.4 (100%)	337.9	96.5	673.9	425.4

자료 : 통계청 '2010년 가계금융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계

○ (다섯째) 은퇴빈곤층은 평균 자산대비 사적연금 비중이 은퇴부유층보다 낮음(※ 5쪽과 6쪽의 표 참고)

- (은퇴빈곤층) 은퇴빈곤층의 평균 사적연금은 61만원으로 평균 자산 대비 0.9%에 불과함
  - 자산이 5억원을 초과한 은퇴빈곤층은 사적연금은 87만원으로 평균 자산 대비 0.1%에 불과함
  - 자산이 1억~3억원인 은퇴빈곤층은 사적연금이 평균 자산의 0.9%인 140만원에 불과해 노후 준비가 미흡함
- (은퇴부유층) 은퇴 부유층의 사적연금은 2,200만원으로 은퇴빈곤층의 61만원보다 36배나 많음. 그러나 자산대비 사적연금 비중이 1.4%로 높은 수준은 아님
  - 자산이 5억원을 초과한 은퇴부유층의 사적연금은 2,391만원으로 은퇴빈곤층보다 29.5배나 많음
  - 자산이 1억~3억원인 은퇴부유층의 경우, 사적연금 114만원으로 평균 자산의 0.5%로 은퇴 부유층에서 가장 낮음
  - 자산이 1억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은퇴부유층인 가구의 경우, 사적연금도 총 자산의 1.6%인 100만원으로 은퇴 빈곤층보다 3배 많음

### 3. 시사점과 과제

○ (시사점) 대부분의 은퇴빈곤층은 나이가 많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고 소유한 자산도 별로 없음

- 대부분의 은퇴빈곤층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내야함
  - 자산이 있어도 자산 운용에 실패해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한 경우도 소수 존재 함. 은퇴부유층이 되기 위해서는 자산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을 잘 운용하는 것도 중요함
- 은퇴빈곤층은 과도한 부채로 생활비 조달이 어렵고 노후 준비도 부족하여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음
-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노령가구를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세대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사회통합의 잠재 위협요인으로 작용
  - 은퇴빈곤층의 방치는 기초노령연금의 수요를 급증시키는 등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 필요

○ (단기 과제) 현재 은퇴빈곤층(Retire Poor)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 연금<sup>10)</sup>과 즉시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고 복지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은퇴 후의 재취업 기회를 늘리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첫째, (주택 연금) 은퇴자들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집이 있어도 꾸준한 월 소득이 없어 은퇴빈곤층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활성화가 필요함
  -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주택으로 자산이 묶여 자산소득이 없는 은퇴빈곤층을 위해 주택 연금이 필요함
  - 최근 부동산 시장의 매매 부진과 자녀에게 의지하고 않고 독립적인 경제권을 유지하려는 사회 현상으로 가입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 둘째, (즉시연금 가입) 은퇴부유층도 사적 연금 저축액이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매월 일정액을 받을 수 있는 사적 연금 가입이 필요
  - 일정 자산을 가진 은퇴한 세대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즉시연금 가입이 필요
- 셋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 현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 빈곤층이 많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수정이 필요
  - 현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노인 빈곤층 등 부양의무자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임
  - 소득기준을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으로 조정함으로써 비수급 노인 빈곤층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 넷째 (퇴직 후 재취업의 기회) 은퇴 후 재취업의 기회를 가져 꾸준한 월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노인들을 위한 '소일거리' 창출로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
  - 은퇴자의 전문성과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노인 취업 박람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은퇴자를 채용한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도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노인의 직업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노인 취업 지원 센터'를 만들어 재취업 기회를 제공함

10) 주택 연금: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사에서 노후생활 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임.

- (장기 과제) 본격적으로 은퇴가 시작되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그 이후 세대들이 은퇴빈곤층(Retire Poor)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적 연금 활성화와 정년 연장이 필요함
  - 첫째 (사적연금 활성화) 자산이 적어도 사적연금을 통해 은퇴준비를 열심히 한 은퇴부자를 보면 사적 연금의 중요성이 부각됨. 이러한 사적 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금융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필요
    - 사적연금을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제혜택을 크게 늘려야 하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금융사는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길러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은퇴준비를 위한 교육을 제공
  - 둘째 (정년 연장) 평균 기대 수명 증가에 비해 은퇴 연령이 낮기 때문에 정년을 늘려야함
    - 고령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은퇴빈곤층을 줄이고 복지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임

정 민 연구원 (2072-6220, chungm@hri.co.kr)  
이준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은퇴빈곤층과 은퇴부유층의 사례>

**[사례1]** 자산은 많으나 자산소득이 적고 원리금 부담이 커서 은퇴빈곤층으로 전락한 A씨

- 만63세로 수도권에 사는 A씨는 총자산 13억 7,060만원으로 그 중 13억원 거주 주택으로 묶여 있어 임대소득도 없어 매달 경상소득이 10만원에 불과. 대출잔액은 3억 7,000만원으로 매달 이자로만 192만원을 지불하고 재산세도 납부하면서 월평균 비소비지출이 254.5만원에 이르러 가처분소득이 -244.5만원을 기록 (A씨의 최소생활비는 100만원, 적정생활비는 200만원)

**[사례2]** 자산은 적지만, 수익을 낚는 금융자산을 통해 은퇴부유층이 된 B씨

- 수도권에 사는 만73세 B씨는 총자산 6,226만원을 수익을 낚는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특히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사적연금에 100 만원을 투자 여기에 공적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등의 기타 소득원을 더해 월 가처분소득이 271.9만원에 이룸 (B씨의 최소생활비는 70만원, 적정생활비는 100만원)

**[사례3]** 의료비 때문에 은퇴빈곤층으로 전락한 C씨

- C씨는 급박하게 의료비를 조달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음. 매달 100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월 가처분소득이 9.1만원에 불과함 (C씨의 최소생활비는 150만원, 적정생활비는 200만원)

<은퇴빈곤층과 은퇴부유층의 자산구조>

(단위 : 만원)

		A씨(은퇴빈곤층)	B씨(은퇴부유층)	C씨(은퇴빈곤층)
자 산 부 채	총자산	137,060	6,226	16,790
	부동산	136,000	0	16,640
	주택	130,000(1채)	0	16,000
	금융자산	1,010	6,150	150
	사적연금	0	100	0
	총부채	37,000	0	15,224
	대출잔액	37,000	0	15,000
	순자산	100,060	6,226	1,566
소 득 지 출	월평균 경상소득(A)	10	273.2	150.0
	월평균 비소비지출(B)	254.5	11.7	140.9
	이자	192.0	0	100.0
	월평균 가처분소득(AB)	-244.5	261.5	9.1
	월 소득인정액	-77.7	271.9	11.7

자료 : 통계청 '2010년 가계금융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재구성

<별첨1>

○ (연령별) 연령이 높아질수록 은퇴빈곤층의 비중이 높고 은퇴부유층의 비중은 낮음

- 고령은퇴가구 대비 은퇴빈곤층의 비중은 60대, 70대, 80대 이상에서 각각 25.7%, 44.7%, 52.5%인 반면, 은퇴부유층은 각각 5.3%, 2.5%, 0.4%임
- 이는 60대가 국민연금(1988년 도입), 개인연금(1984년 도입) 등 다양한 은퇴 준비 방법을 활용한 반면, 70대 이상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모든 연령대에서 은퇴빈곤층과 은퇴부유층의 월 소득인정액과 월 가처분 소득의 격차가 매우 큼
- 60대 내에서도 은퇴빈곤층의 월 소득인정액은 43.1만원에 불과한 반면 은퇴부유층은 688.1만원에 이르러, 그 격차가 16.0배에 이름. 80대 이상에서의 격차는 26.8배로 가장 큼
- 은퇴 빈곤층에서는 60대가 70대 이상보다 소유한 자산이 높아 소득 인정액이 가장 높은 반면, 은퇴 부유층에서는 80대의 가처분 소득이 94.2만원에 불과하지만 소득인정액이 849.8만원으로 가장 높음
- 60대 내에서도 은퇴빈곤층의 월 가처분 소득은 27.2만원에 불과한 반면 은퇴부유층은 454.8만원으로 격차가 16.7배로 가장 크고 80대 이상에서의 격차는 3.5배로 가장 작음

< 연령별 분포 >

(단위: 만가구, 만원)

연령	고령 은퇴 가구수	은퇴빈곤층					은퇴부유층				
		가구 수	최소 생활비	최저 생계비	소득 인정액	가처분소득	가구 수	적정 생활비	최저 생계비	소득 인정액	가처분소득
60대	104.2	26.8 (25.7%)	83.3	77.3	43.1	27.2	5.5 (5.3%)	353.6	103.5	688.1	454.8
70대	120.1	53.7 (44.7%)	71.3	70.5	37.4	28.2	2.5 (2.1%)	321.8	87.5	626.6	422.6
80대 이상	40.0	21.0 (52.5%)	58.0	67.8	31.7	27.2	0.4 (1.0%)	266.7	78.2	849.8	94.2
합계	264.3	101.5 (38.4%)	71.8	71.8	37.7	27.7	8.4 (3.2%)	337.9	96.5	673.9	425.4

자료 : 통계청 '2010년 가계금융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계

<별첨2>

○ (자산별) 자산이 적은 가구의 대부분은 은퇴빈곤층이나, 자산이 많은 가구 중에서도 은퇴빈곤층이 소수 나타남

- 자산이 1억원 미만인 가구의 대부분은 은퇴빈곤층이며, 은퇴부유층의 비중은 매우 낮음
  - 자산이 1천만원 미만인 42.4만 가구 중 70.8%인 30.0만 가구가 은퇴빈곤층임
  - 자산이 1천만원~1억원인 86.8만 가구 중에서도 은퇴빈곤층은 50.1만 가구로 57.7%이고 은퇴부유층은 0.1만 가구로 0.1% 차지함
- 그런데 자산이 많은 가구 중에서도 은퇴빈곤층이 나타남
  - 자산이 5억원 이상인 33.5만 가구 중, 은퇴빈곤층은 0.7만 가구로 2.1% 차지함
  - 특이한 점은 자산 5억원 이상의 은퇴부유층의 월 소득인정액과 월 가처분소득이 각각 682.0만원, 411.1만원에 이르는 반면, 은퇴빈곤층은 각각 -63만원, -197.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임
  - 은퇴빈곤층으로 전락한 5억원 이상 자산가들 대부분은 과도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원리금 부담에 시달리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자산이 많은 것’이 은퇴부유층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일 수는 있으나 충분조건은 아님을 의미함
  - 은퇴부유층이 되기 위해서는 자산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은퇴를 고려하여 자산을 잘 운용하는 것도 중요함을 시사함

< 자산별 분포 >

(단위: 만가구, 만원)

자산별	고령 은퇴 가구수	은퇴빈곤층					은퇴부유층				
		가구 수	최소 생활비	최저 생계비	소득 인정액	가처분소득	가구 수	적정 생활비	최저 생계비	소득 인정액	가처분소득
1천만원 미만	42.4	30.0 (70.8%)	57.0	62.8	30.1	29.9	-	-	-	-	-
1억원 미만	86.8	50.1 (57.7%)	66.6	69.9	37.0	30.7	0.1 (0.1%)	100.0	53.3	271.9	261.5
3억원 미만	74.9	18.7 (25.0%)	95.9	85.6	56.3	32.9	0.2 (0.3%)	325.0	104.0	613.1	594.0
5억원 미만	26.7	2.0 (7.5%)	120.8	96.5	56.7	8.3	0.5 (1.9%)	226.7	99.6	685.2	629.5
5억원 이상	33.5	0.7 (2.1%)	192.9	117.3	-63.3	-197.0	7.6 (22.7%)	348.7	96.9	682.8	411.1
합계	264.3	101.5 (38.4%)	71.8	71.8	37.7	27.7	8.4 (3.2%)	337.9	96.5	673.9	425.4

자료 : 통계청 ‘2010년 가계금융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계



<별첨3>

- (대출목적) 고령 은퇴가구주들은 대부분 거주 주택과 거주 이외 부동산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음. 그러나 은퇴 빈곤층은 과도한 대출로 생활비 조달이 어려워지고 대출 상환능력이 떨어져 다시 금융 대출을 받음
- 자산 5억원 이상의 은퇴빈곤층은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대출 잔액이 1억 4,285만원으로 총 대출잔액의 52.0%이고, 생활비는 5,786만원으로 21.1% 차지함
  - 기타 소득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한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한 후 원리금과 이자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결국 생활비를 조달과 원리금과 이자 상환 목적으로 대출을 다시 받은 것임 (11쪽 사례1 참조)
  - 한편 자산 5억원 이상의 은퇴부유층은 거주주택과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마련을 위한 대출 잔액이 각각 946만원, 456만원으로 59.8%, 28.7%를 차지함. 대출 규모로 보면 은퇴 부유층은 부동산을 구입을 위해 과도한 대출을 받지 않음
- 자산이 1억~3억원과 3억~5억원인 은퇴빈곤층은 거주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잔액이 각각 630만원, 1,000만원으로 56.4%, 25.7%를 차지함. 또한, 의료비 조달을 위한 대출은 각각 182만원, 433만원으로 16.3%, 11.2%를 차지함
  - 특히 은퇴빈곤층 중 의료비 조달을 위해 1000만원 이상을 대출한 가구가 1.0만 가구에 이름 (11쪽 사례3 참조)
  -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제도, 사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의료지출이 발생할 경우, 은퇴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 또한 5억미만인 은퇴 빈곤층에서는 금융대출 잔액의 42.9%인 1,667만원을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다시 받은 것으로 나타남

<금융 대출<sup>11)</sup> 목적 >

(단위: 만원, %)

자산규모	은퇴빈곤층						은퇴부유층			
	계	거주 주택 마련	거주 이외	생활 비	의료 비	부채 상환	계	거주 주택 마련	거주 이외	생활 비
1천만원 미만	114 (100.0)	-	-	4 (3.8)	1 (1.0)	24 (20.5)	-	-	-	-
1억원 미만	225 (100.0)	45 (20.1)	-	24 (10.5)	8 (3.4)	18 (7.8)	-	-	-	-
3억원 미만	1,118 (100.0)	630 (56.4)	142 (12.7)	92 (8.2)	182 (16.3)	-	10,000 (100.0)	-	-	-
5억원 미만	3,885 (100.0)	1,000 (25.7)	-	302 (7.8)	433 (11.2)	1,667 (42.9)	1,667 (100.0)	-	-	-
5억원 이상	27,471 (100.0)	-	14,285 (52.0)	5,786 (21.1)	-	257.1 (0.9)	1,582 (100.0)	946 (59.8)	456 (28.7)	19 (1.2)
합계	759 (100.0)	158 (20.9)	198 (26.0)	105 (13.9)	47 (6.1)	53.0 (7.0)	1,836 (100.0)	853 (46.4)	410 (22.3)	17 (0.9)

자료 : 통계청 '2010년 가계금융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계

11) 금융 대출 잔액은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대출의 합을 의미함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9년					2010					2011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2.6	-4.9	-0.7	1.6	5.0	2.9	3.7	1.7	2.6	3.2	2.5
유로 지역	-4.1	-2.5	-0.1	0.4	0.2	1.8	0.4	1.0	0.4	0.3	2.0
일본	-6.3	-20.1	10.8	-1.9	7.3	3.9	6.0	2.1	3.3	-1.1	-0.7
중국	8.7	6.2	7.9	9.1	10.7	10.3	11.9	11.1	10.6	9.8	9.6
한국	0.2	-4.3	-2.2	1.0	6.0	6.2	8.5	7.5	4.4	4.7	4.3

주: 1) 2011년 전망치(E)는 IMF 2011년 1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8월12일	8월18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83	3.89	3.30	2.26	2.06	-0.20%p
	엔/달러	92.93	88.43	81.19	76.85	76.54	-0.31 ¥
	달러/유로	1.4413	1.2238	1.3350	1.4225	1.4434	0.0209\$
	다우존스지수(p)	10,428	9,774	11,578	11,269	10,991	-278p
	닛케이지수(p)	10,655	9,383	10,229	8,964	8,944	-20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4.41	3.86	3.38	3.49	3.56	0.07%p
	원/달러(원)	1,164.5	1,222.2	1,134.8	1,078.5	1,074.0	-4.5원
	코스피지수(p)	1,682.8	1,698.6	2,051.0	1,793.3	1,860.6	67.3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8월12일	8월18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79.35	75.77	91.40	85.38	82.02	-3.36\$
	Dubai	78.06	73.14	88.80	102.28	105.04	2.76\$
CRB선물지수	283.38	258.52	332.80	326.53	326.42	-0.11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